

광주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794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7945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소128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프터너스

담당변호사 김지훈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현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석

변론 종결2024. 9. 6.

판결 선고2024. 10. 11.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소128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8,690,000원 및 그 중 22,99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30.부터,

5,7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21.부터 각 2024.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90,000원 및 그 중 5,7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20.부터, 22,99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일공사 등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 B은 그 딸인 피고 C 사업자명의로 'D'란 상호의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1. 3.경 위 식당의 타일공사를 맡게 되면서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자 E은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303806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2021. 7. 8. 광주지방법원 2021타채6700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4,908,273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21. 7. 12.경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예금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1. 7. 12. 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7,990,000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2021. 7. 14.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위 'D'에서 4차례에 걸쳐 합계 2,700,000원(= 1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H1)'에서 3,000,000원 총합계 5,700,000원을 결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7. 14.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각서'를 작성하였다.

2021. 7. 14. 현금각서

※ 채권자 B(피고 B)

※ 채무자 A(원고)

※ 금액 2억 1천만 원 돈을 빌리고 갚는다(원금의 이자는 은행의 이자로 친다)

※ 또한 이 돈의 목적은 원고와 피고 B과의 투자 목적으로 정한다.

※ 원고가 2억 1천만 원 투자하면 피고 B도 똑같이 투자한다.

※ 제3의 투자 이익이 생겼을 때는 가차 없이 원고와 피고 B이는 똑같이 나눈다.

바. 피고 B은 원고의 위 F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21. 7. 28. 이 사건 송금액 중 30,000,000원을 위 E에게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1. 7. 26.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7.말경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현금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현금합의서'라고 한다).

현금합의서

갑: A(원고)

을: B(피고 B)

상기 갑과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 다음 >

1. 현금합의서의 대상은 원고 및 피고 B 부동산 투자 목적이었으나, 원고 개인적 의견 차이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모든 것은 원고가 책임진다.

2. 원고가 투자한 일부의 돈 200,780,000원을 피고 C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다.

3. 위 투자금 중,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물취 계약금 30,6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20,000,000원을 부담한다(피고 B은 10,600,000원을 부담한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변제한다.

4.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은 15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21. 7. 30.까지 이를 반환한다.

5. 원고가 피고 C 통장으로 입금한 돈은 원고와 피고 B이 투자할 목적으로 입금한 돈이므로, 피고 C와는 무관한 돈이다.

아. 피고 B은 2021.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합의서 제4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송금액 중 155,000,000원(= 1차 송금액 150,000,000원 + 2차 송금액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먼저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하게 된 경위는, E이 위 F 계좌를 압류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 I에게 이를 말하였고, 피고 I은 고문번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E의 압류금이 3억 원 이상'이라고 알려주면서 원고의 다른 계좌에 압류하지 못하도록 그 계좌의 돈을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면 이를 보관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 기망에 속아서 E의 실제 압류 금액(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된 것이다. 이에 피고 J에게 기망 당하여 피고 C 앞으로 계좌이체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2023. 3.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2)를 취소하였다.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로 투자하였던 광주 남구 K에 있는 세탁소(이하 'K 세탁소'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 계약금 30,600,000원을 물취당하였다고 하여 그 물취된 계약금 중

20,000,000원을 원고가, 10,600,000원을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은 실제로 위 경매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였고,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 사건 송금액 중 남은 잔금도 주지 않겠다.'라며 원고를 강박하였다. 이같이 이 사건 현금합의서는 피고 B의 위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그리고 피고 B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민법 제109조 및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송금액 207,990,000원 중 피고 B이 2021. 7. 28. E에게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30,000,000원과 2021. 7. 30. 원고에게 반환한 1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22,990,000원(= 207,990,000원 - 30,000,000원 - 15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미반환 송금액'이라 한다)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다음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D'에서 결제하였으며, 'H'에서 식자재인 고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을 일부 현금화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 상당액인 5,7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송금액의 송금 및 이 사건 현금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강박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들은 K 세탁소의 경매 취득이 아닌 전남 화순군 L에 위치한 대지 500평(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를 위해 토지 매도인인 M에게 계약금 30,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금합의서 중 물취 계약금 부분에 대해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자동차보험료 대납, 의류비 등 현금으로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 중 3,000,000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카드결제금액 2,700,000원 및 과다 경비 등을 합하여 5,000,000원을 2021. 7. 30. 추가로 송금하여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미반환 송금액에 관하여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의 실제 채권압류 금액이 이 사건 송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만으로 피고 B이 위 채권압류 금액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송금액을 반환할 의사 없이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 급부의 원인행위가 피고 B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 이 사건 미반환 송금액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현금합의서가 피고 B의 기망이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8, 19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현금합의서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3. 3. 6. 준비서면이 피고 B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현금합의서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한편 이 사건 송금액 보관에 관한 계약은 그 목적 달성 또는 원고의 반환요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미반환 송금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미반환 송금액 22,990,000원³⁾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6087 판결 등 참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 B이 K 세탁소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 계약금 30,6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계약파기로 인해 위 계약금이 몰취당하자 이에 대한 몰취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정산하기 위해 이 사건 현금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21. 8. 21. 통화내용에 비추어, 피고 B은 원고의 G은행 계좌에 관한 E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8호증),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21. 8. 20. 통화내용에 비추어, 피고 B이 원고에게 K 세탁소에 관한 부동산 투자를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B의 제안을 다음날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9호증), ③ 피고 B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 K 세탁소에 관해 본 경매일이 2021. 7. 27.이고, 2021. 7. 24. 예비 입찰을 받아 계약금 30,600,000원을 법원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4), 이후 이 법원에서 L 부동산 매수를 위해 계약금 30,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계속 바뀌고 있는 점, ④ 피고 B은 L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부 영수증 등 위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단지 부동산 중개인이 사망하였고, 원고가 L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찢어버려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점, ⑤ 피고 B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형사판결과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검사가 기재한 불기소이유를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되어 부동산 투자 논의가 있어 피고 B이 관련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손해액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현금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착오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생긴 것이거나 피고 B이 유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현금합의서는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그 내용으로 하며, 부동산 계약금 몰취에

관한 부분을 반환해야할 이 사건 송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금 물취 부분에 대한 착오는 이 사건 현금합의서 작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논의 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L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계약금 물취 부분에 관해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토지 매도인인 N에게 계약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2021. 7. 14.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5,7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결제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결제금액 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원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 전액을 원고의 자동차보험료 대납, 의류비 등 현금, 2021. 7. 30. 2차 송금액 5,000,000원 중 일부(= 과다 경비 정산금 2,300,000원 +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 중 나머지 2,700,000원)를 통해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21. 8. 21. 통화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B에게 '카드깡'을 언급하며 결제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8호증), ② 피고 B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동차보험료는 이 사건 카드 결제일 이전인 2021. 5. 25. 원고가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21. 8. 21. 피고 B에게 보낸 '고소장은 취소했고, 전세, 남은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까지 함께 정산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B이 2021. 7. 30. 원고에게 2차 송금한 5,000,000원은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 중 일부 금액 반환이 아닌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미반환 송금액에 관한 반환금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B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카드를 주었으나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카드도 직접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도 피고 B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에 부합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8,69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미반환 송금액 22,99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반환을 구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30.부터5),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인 5,7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반환을 구한 다음날인 2021. 8. 21.부터6)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C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또한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송금액을 보관·관리하였으며, 피고 B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7,990,000원을 입금하였고, 'D'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C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송금액 및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으로 인한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민수

판사김정숙

판사이상현

- 1) 위 D 식당에 식자재인 고기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 2) 이 사건 송금액의 보관을 맡기는 임치나 위임 등의 급부원인행위
- 3) 이 사건 현금합의서에 따른 물취 계약금 중 원고 손해 분담액 20,000,000원 + 나머지 2,990,000원
- 4) 실제 해당 날짜에 경매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5)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80210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처음 보낸 2021. 7. 26. 다음날부터 발생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6) 원고는 신용카드 결제 승인일인 2021. 7. 2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2021. 8. 20. 피고 B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카드결제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인정된다.